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56호 2021. 12. 9.(목)

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414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- 1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344호 어촌뉴딜300사업(영북항) 기본계획(변경) 고시 ----- 3
- 사천시 고시 제35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6
- 사천시 고시 제35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 7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1560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----- 8
- 사천시 공고 제1561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----- 9

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1566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0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사천시 훈령 제414호

사천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1년 12월 9일

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

사천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사천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지하수 업무 이관에 따른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 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756 호

사천시 고시 제2021 - 344호

어촌뉴딜300사업(영북항) 기본계획(변경) 고시

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'어촌뉴딜300사업(영북항)'에 대하여 「어촌·어항법」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2. 9.

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어촌뉴딜300사업(영북항)

2. 사업의 목적

- 낙후된 어촌·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·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

3. 사업비 소요액 : 14,967백만원(국비 10,477, 도비1,347 , 시비 3,143, 자부담 별도)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4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
○ 사업의 내용

- 공통사업

- 영북항 : 방파제 설치, 주차장 설치, 안전휀스 설치
- 광포항 : 부잔교 확충
- 산분령항 : 물양장 설치
- 실안항 : 방파제 확충, 계류장 설치, 물양장 설치, 어구보관창고 설치

- 특화사업

- 산분령항 : 다목적회관, 해상좌대낚시터

- S/W사업 :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, 마을 브랜드 개발 등

○ 사업의 구역 : 사천시 실안동 산4-1번지 영북항 외3개항(광포항,산분령항,실안항)일원

5. 사업기간 : 당초 - 2019.01.01. ~ 2021.12.31. (3년간)

변경 - 2019.01.01. ~ 2022.12.31. (4년간)

※ 변경사유 : 주민협의 등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변경

6. 사업의 효과

-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
-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7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청(해양수산과)

[위탁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]

8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: “붙임조서 참조”

9. 기 타

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(☎055-831-3125)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
사 천 시 공 보

제 756 호

■ 붙임 :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위치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	
실안동	1187-3	잡	1,694	800	사천시					
실안동	875-21	잡	1,579	400	해양수산부					
실안동	1187-2	도	1,642	45	국토교통부					
실안동	1096-41	잡	200	200	사천시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355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2. 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1- 15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1년 11월 29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선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방파제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실안동 1187-3번지선 일원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,770m²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1. 11. 29. ~2050. 12 .31.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)
 - 나. 주 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35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2. 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21-15호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선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방파제 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사천시 실안동 1187-3번지선 일원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1-12호
 - 공사기간 : 2021. 12. 3.~2022. 12. 31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1. 12. 3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

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

사천시 공고 제 2021-1560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객방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9일

사 천 시 장

소하천명	사업 개요								비고	
	공사명	공사 위치		사업량(m)			공사기간			공사 목적
		시작하는 지점	끝나는 지점	축제 (築堤)	호안 (護岸)	기타	착공	준공		
객방천	객방소하천 정비공사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203-6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56-8	880	880	교량 7개소	2021년 12월	2023년 12월	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	보상 1식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

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

사천시 공고 제 2021-1561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온정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9일

사 천 시 장

소하천명	사업 개요								비고	
	공사명	공사 위치		사업량(m)			공사기간			공사 목적
		시작하는 지점	끝나는 지점	축제 (築堤)	호안 (護岸)	기타	착공	준공		
온정천	온정소하천 정비공사	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663-1	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696-2	1,760	1,760	교량 5개소	2021년 12월	2024년 12월	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	보상 1식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사천시 공고 제2021-1566호

「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9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헬스장 및 당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헬스장 및 당구장 사용료 반영(안 별표1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사 천 시 공 보

제 756 호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우주항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우주항공과장)

[(우)52539 /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우주항공과)

전화번호: 055)831-3055, 팩스번호: 055)831-6044]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생 년 월 일:

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시장”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시에 기부채납”을 “사천시에 기부채납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의 관리) <u>시장</u>은 복지관의 체육시설, 회의실, 사무실 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설의 관리) <u>사천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, 준공과 동시에 <u>시에 기부채납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사천시에 기부채납</u> ---- 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시행규칙) <u>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
【별표 1】

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(제7조 관련)

구 분	사 용 료	비 고
대 강 당	○1일 1회: 30,000원	○1회: 2시간 이내 (1시간 초과 시 마다 20% 가산) ○평일 18:00이후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20% 가산 ○동·하절기 냉·난방비: 1시간당 10,000원
소회의실	○1일 1회: 20,000원	
그 밖의 교육장 (직업교육장)	○1일 1회: 20,000원	○1회: 2시간 이내 (1시간 초과 시 마다 20% 가산) ○평일 18:00이후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20% 가산 ○동·하절기 냉·난방비: 1시간당 10,000원
족구장 (배구장·농구장)	○조명사용료: 10,000원	○1회: 2시간
헬스장	○월 사용료: 35,000원	○1개월: 35,000원
당구장	○1회: 3,000원	○1회: 30분 (10분 초과 시 마다 1,000원 가산)

사 천 시 공 보

제756호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